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7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9까지로 하고,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6)제1항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실제 부양 여부”를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한다.

제10조의8(종전의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7)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7) 제4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의5 (생략)	제10조의6 (현행 제10조의5와 같음)
제10조의6(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실제 부양 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7(확인조사) ① ----- ----- ----- ----- ----- ----- ----- ----- ----- ----- ----- 가구원의 소득·재산----- ----- ----- -----.

제10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

가구원

- ② _____
- _____
- _____

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 4. (생략)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u>제10조의8</u> (생략)	----- ----- --. 1. ----- ----- <u>가구원</u>-----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가구원</u>----- ----- ----- ----- --. <u>제10조의9</u> (현행 제10조의8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